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6

발의연월일: 2020. 7. 7.

발 의 자:이병훈·김경만·노웅래

이낙연 · 김병욱 · 정청래

전재수 · 양정숙 · 민형배

이장섭 · 민홍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거진 체육계 고질적인 폭력 및 성폭력 등 스포츠 인권관련 사안은 밑바탕에 엘리트 체육의 특수성과 맞물린 성과 지상주의, 메달 지상주의라는 구조적인 원인에 따른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이 더 이상 과거 개발시대의 국위선양의 도구로 기능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과 선수, 체육지도자 모두가 여가를 즐기며 건강을 지키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갖고 심신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국민체육의 목적이 국위선양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에 노력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엘리트와 남성 중심의 체육계 문화를 타파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10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을 "체육을 통해 연대감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국민행복과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으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3(여성 체육지도자의 고용)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제10조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성 체육지도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여성 체육지도자의 고용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제1조(목적)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 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체육을 통해 연대감을 향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상시키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 으로 국민행복과 건강한 공동체 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의 실현-----로 한다. 제10조의3(여성 체육지도자의 고 <신 설> 용)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 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제10조 또는 제 14조제3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여성 체육지 도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여성 체육지도자의

 고용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